

제43기 임시 총회 (서면 결의) 안건



사단법인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

제43기 임시 총회 서면결의 건

◇. 서면결의 기간 : 2026. 7. 29. ~ 8. 12.

◇. 회신 기한 : 2026. 8. 12(수) 17:00 까지

◇. 안 건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천안시 승인의 건)

※서면의결서에 의결 여부를 표시하신 후, 회신 기한 내 위임장과
함께 원본 제출 바랍니다.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천안시 승인의 건)

본 건은 관리공단 정관 개정(2026.6.11일자)으로 제17조(임원의선출), 제21조(보수와겸직 금지), 제22조(임원의직무), 제25조(정관기타서류정비), 제30조(총회의의결방법), 제32조(이사회) 규정을 현행화 하고 임원의 임기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19조(임원의임기) 규정을 개정하고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임.

【 개 정(안) 】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7조(임원의 선출) ② 전무이사는 비회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전무이사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및 임원(이사,감사,전무이사)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취임한다.	제17조(임원의 선출) ② 상근직 이사는 비회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 및 임원(이사,감사,상근직 이사)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취임한다.	제16조(임원의정수) 개정때 따른 단서조항 삭제 〃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영입 임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임원 임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제21조(보수와 겸직금지) ① 전무이사와 직원에게는 따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 전무이사와 직원은 타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21조(보수와 겸직금지) ① 상근직 이사와 직원에게는 따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 상근직 이사와 직원은 타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정수) 개정때 따른 〃
제22조(임원의 직무) 2. 이사장 유고시는 전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7.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장을 보좌하고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2. 이사장 유고시는 상근직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7. 상근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장을 보좌하고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
제25조(정관 기타서류 구비) ① 전무이사는 정관,규정,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언제든지 전무이사에 대하여 전①항의 서류를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무이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5조(정관 기타서류 구비) ① 상근직 이사는 정관,규정,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언제든지 상근직 이사에 대하여 전①항의 서류를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근직 이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 〃
제30조(총회의 의결방법)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30조(총회의 의결방법)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근직 이사가 의장이 된다.	〃
제3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및 전무이사로서 구성한다.	제3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및 상근직 이사로서 구성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공단의 설립 당시 종전 천안중소기업시험공업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 천안시 기업지원과 - _____('26. 00. 00) 정관 개정 승인